

제154차 학교법인국제대학교 이사회 회의록

구 분	이 사	감 사
임원정수	7 인	2 인
재적임원	7 인	2 인
참석임원	6 인	1 인

1. 일 시 : 2019. 6. 14(금) 오후 6시 (회의소집 통보일 : 2019년 6월 4일)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46-15 청원빌딩 4층
3. 임원 출·결 사항
 - 참석 이사 (6인) : 김홍경, 김방, 박성배, 이혜선, 황인하, 황철순
 - 참석 감사 (1인) : 임안식
 - 결석 이사 (1인) : 강재상
 - 결석 감사 (1인) : 임재현
4. 안 건
 - 가. 정관 개정(안)
 - 나. 이사 선임(안)
 - 다. 교원 재임용(안)
 - 라. 교원 전보(안)
 - 마. 기타사항(안)
5. 회의내용
 - 간 사 : 성원보고.
 - 이 사 장 : 개회선언.

< 제1호 안건. 정관 개정(안) >

- 이 사 장 : 제1호 안건인 정관 개정(안)을 상정하고 교무처장 및 기획처장에게 안건에 대하여 설명 요청하다.(교무처장 및 기획처장은 신·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조항별로 설명하고 이사들은 신·구조문대비표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다.)
- 황철순 이사 : 검토결과 정관 개정(안)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.
- 박성배 이사 : 제안에 동의하다.
- 황인하 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- 이 사 장 : 이의 여부 묻다.
- 이 사 일 동 : 전원 찬성하다.
- 이 사 장 : 제1호 안건인 정관 개정(안)은 [별첨]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 할 것으로 만

<간서명>	박성배	이혜선	김방
-------	-----	-----	----

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000

< 제2호 안건. 이사 선임(안) >

이 사 장 : 제2호 이사 선임(안)을 상정하다. 개방이사인 _____ 이사의 임기가 2019년 7월22일
자로 만료됨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_____ 개방이사 후보자와
_____ 개방이사 후보자 중 1명을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4년간 개방이사로 선임하는
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_____ 이사에게 퇴실을 요청하다.
(_____ 이사 퇴실하다.)

이 사 장 : 이사들에게 추천받은 개방이사후보자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선출방식에 대하여
의견을 요구하다.
(이사들은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거수로 선출하는 것으로 선정
하다.)

이 사 장 : _____ 후보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는데 찬성하는 이사들에게 거수 요청하다.
(김홍경, 김방, 박성배, 이해선, 황인하 이사 거수)
다음으로 _____ 후보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는데 찬성하는 이사들에게 거수 요청하
다.
(없음)

이 사 장 : 거수결과 _____ 후보가 만장일치로 개방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며 이사들에게
이의여부를 묻다.

이 사 일 동 : 이의 없음.

이 사 장 :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_____ 개방이사 후보와
_____ 개방이사 후보에 대하여 거수를 실시한 결과 총 5명의 임원 만장일치로
_____ 후보가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4년간 학교법인 국제대학교 개방이사로 연임되었음
을 선포하다.000
(_____ 이사 입실하다.)

< 제3호 안건. 교원 재임용(안) >

이 사 장 : 제3호 안건인 교원 재임용(안)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교무처장에게 설명 요청하
다.

교 무 처 장 : 재임용 심사결과에 따라 2019. 8.31.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모델연기학과 부교수
를 2019. 9. 1. ~ 2024. 8.31.까지 재임용하는 것임을 설명하다.

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 명단

연번	소속	직급	성명	생년월일	최초임용일	재임용 기간	비고
1	모델연기학과	부교수		65. 8.23.	99. 3. 1.	2019. 9. 1. ~ 2024. 8. 31.(5년)	

<간서명>	박성배	이해선	김방
-------	-----	-----	----

이 사 장 : 이사들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다.

(이사들은 자료를 보며 의견을 교환하고,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범위 및 기준 점수에 대하여 묻고 교무처장은 이에 자료를 참고하여 답변하다.)

김 방 이사 :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.

이혜선 이사 : 제안에 동의하다.

황철순 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
이 사 장 : 이의 여부 묻다.

이 사 일 동 : 전원 동의하다.

이 사 장 : 제3호 안건인 교원 재임용(안)은 2019. 8.31.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모텔연기학과 부교수 를 2019. 9. 1. ~ 2024. 8.31.까지 재임용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000

< 제4호 안건. 교원 전보(안) >

이 사 장 : 제4호 안건인 교원 전보(안)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안건에 대하여 설명요청하다.

교 무 처 장 : 2019. 7. 1.자로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외 4명에 대하여 전보 발령하는 것을 설명하다.

□ 전임교원 전보발령 사항

연번	현 소속	직 급	성 명	발령사항	비고
1	보건의료행정학과	교수		소방안전관리학과 근무를 명함.	
2	기계공학과	교수		스마트자동차학과 근무를 명함.	
3	기계공학과	부교수		항공정비학과 근무를 명함.	
4	아동보육학과	교수		유아교육과 근무를 명함.	
5	호텔관광경영학과	부교수		항공서비스학과 근무를 명함.	

이 사 장 : 이사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다.

(이사들 자료를 보며 의견을 교환하다)

박성배 이사 :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.

황인하 이사 : 제안에 동의하다.

이혜선 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
이 사 일 동 : 전원 찬성하다.

이 사 장 : 제4호 안건 교원 전보(안)은 2019. 7. 1.자로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외 4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보 발령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000

이 사 장 : 다른 의견 여부를 묻다.

법 인 국 장 : 보고사항으로 서정리역 역명부기 재계약과 관련입니다. 서정리역(국제대학) 역명부기 계약기간은 2019. 7. 1. ~ 2020. 6.30.까지이며, 사용료 이외의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, 보험계약자는 국제대

<간서명>	박성배	이혜선	김방
-------	-----	-----	----

학교로 피보험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며, 보증내용은 서정리역[국제대학]역명부기 계약에 따른 역명표지, 차내노선, 열차내 안내 방송의 유지보수 및 원상복구 등의 이행보증으로 SGI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 가입 신청하여 발급받는 내용입니다. 또한,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역명부기 계약 갱신 시 SGI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 가입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이사회 보고 없이 승인하는 것임을 설명하다.
(이사들은 의견을 교환하다.)

이 사 장 : 다른 의견 여부를 묻다.

이 사 일 동 : 의견 없음.

(임원들간의 호선으로 간서명 자는 김방 이사, 박성배 이사, 이해선 이사로 선정하다.)

이 사 장 : 폐회를 선언하다. (19:00)

2019년 6월 14일

학교법인 국제대학교 이사회 이사장	김	홍	경	<u>김홍경</u>
	이	사	박	성
	이	사	김	방
	이	사	이	혜
	이	사	황	인
	이	사	황	철
감	사	임	안	식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9조 (임용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대학의 보직은 대학의 장이 보하되, 부총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입학홍보처장, 사무처장, 경영전략실장, 평생학습추진본부장은 대학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39조 (임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대학의 보직은 대학의 장이 보하되, 부총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<u>취업지원처장</u>, 입학홍보처장, 사무처장은 대학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9조 (인사위원회의 기능)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용·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·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</p> <p>2. 제39조 제2항의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</p> <p>3 ~ 6 (생략)</p>	<p>제49조 (인사위원회의 기능)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제39조 제2항 <u>및 제3항</u>의 규정에 의거 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용·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·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</p> <p>2. 제39조 제2항 <u>및 제3항</u>의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</p> <p>3 ~ 6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3조 (하부조직) ① 대학에는 기획처, 교무처, 학생지원처, 입학홍보처, 사무처, 산학협력단, 경영전략실, 평생학습추진본부를 둔다.</p> <p>② 교무처장·학생지원처장·입학홍보처장·산학협력단장은 <u>부교수</u>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고, 기획처장·사무처장·경영전략실장·평생학습추진본부장은 <u>부교수</u>이상의 전임교원, 또는 4급 이상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③ 각 처·실과 산학협력단 <u>및 평생학습추진본부</u>에는 부처(<u>실, 본부, 단</u>)장을 둘 수 있으며, 행정업무를 위하여 부, 과, 팀을 둘 수 있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	<p>제73조 (하부조직) ① 대학에는 기획처, 교무처, 학생지원처, <u>취업지원처</u>, 입학홍보처, 사무처, 산학협력단을 둔다.</p> <p>② 교무처장·학생지원처장·<u>취업지원처장</u>·입학홍보처장·산학협력단장은 <u>조교수</u>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고, 기획처장·사무처장은 <u>조교수</u>이상의 전임교원, 또는 4급 이상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③ 각 처와 산학협력단에는 부처(단)장을 둘 수 있으며, 행정업무를 위하여 부, 과, 팀을 둘 수 있다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<간서명>
10월 10일
이혜선
김민